



환경규제완화 방안의 취지와 추진방향

전 태 봉
환경부 행정관리담당관

1. 환경규제완화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크게 보아 수질, 대기, 폐기물의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24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원의 규제수단은 ① 공해배출업자 등에 대한 허가·승인·신고·등록 등 사전규제 제도 ② 각종 경제적 부과금 제도 ③ 검사·단속·개선명령 등 사후감독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는 오염물질의 배출감소를 위한 사전적 비용이 오염매체의 처리 및 보상에 따른 사후적 비용보다 적다는 측면에서 여타분야에 비하여 규제의 정당성이 있는 분야로서, '80년대 후반이후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등의 관심과 더불어,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사전·사후적 규제가 중복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기업활동에 크게 제약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각종 부과금제도를 통한 간접규제 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기업행위에 대한 직접규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일선조직도 인·허가업무에 치중하여 환경시설정비 등 중요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규제는 반드시 관리해야 할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기타분야는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배출단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환경규제 합

리화 차원의 「환경분야규제완화방안」을 마련, 지난 7월 26일 경제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환경분야 규제완화 방안의 내용

가. 공해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 폐지 및 규제완화

1)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현행 : 환경부(시·도지사 위임)의 설치허가후 배출시설 설치

· 개선 : 신고제로 전환

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취수원 등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고시한 지역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 유지

2)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9종) :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공정도 등

· 개선(3종) : 오염물질 배출공정 및 흐름도,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오염물질처리계획서

3) 대상시설을 공정단위로 개편

· 현행 : 시설별, 규격별로 매건마다 허가

· 개선 : 공정단위별로 관련시설 일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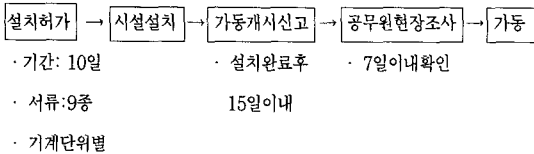
4) 가동절차의 간소화

· 현행 : 설치허가 → 설치 → 가동개시신고 → 현지조사(공무원) → 가동

· 개선 : 설치신고 및 절차 → 가동개시 신고 및 가동
 5) 이의 사례를 보면 지방공단에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수·대기·소음의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15종의 기기설비를 보유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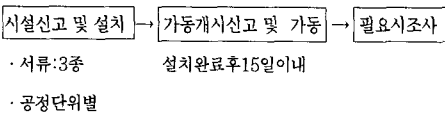
· 현행 : 설비설치 또는 교체시 : 15종의 기계별로 허가필요

허가신청시 기계단위별로 9건(전체 135건)의 서류 제출, 설치허가를 받더라도 기계가동을 위해서는 가동개시신고 → 공무원의 현장확인 절차 필요(설치후 가동까지 약 1개월 소요)



· 개선 : 허가제 → 신고제로 변경

15종의 기계설비를 공정별로 분류하여 신고(예 : 15개의 설비가 2개의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2건의 신고), 신고시 공정별로 3건(2개공정의 경우 전체 6건)의 서류 제출,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가동개시신고와 함께 즉시 가동가능(설치후 가동까지 최대 15일 소요)



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1) 설치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 2) 대상 : 오염물질공동방지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다. 환경관련산업의 시장진입 규제완

개선내용	대상업종
·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폐수처리업 분뇨처리업 정화조 청소업
· 정수제한, 영업구역제한폐지	일반폐기물처리업 특정폐기물처리업

라. 자가측정 의무제도 개선

1) 현행 : 사업자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화

2) 개선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만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제도가 '96. 7월 부터는 배출총량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배출총량제로 변경예정

· 배출총량제가 실시되면 기업인 스스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인식이 제고될 것이므로 의무제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

마. 환경관리인 고용기준 완화

1) 현행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원별로 환경관리인을 의무고용

· 1~2종 사업장의 경우 일일평균 17시간이상 작업시 2급이상 자격소지자 1인 추가

2) 개선

·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복합된 배출시설에서 1인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복수의 자격을 구비한 경우 겸허용(현행 : 4~5종 업체만 허용)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환경관리인을 기술자격자가 아닌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완화(현행 : 동력합계 5,000마력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

·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사업장의 추가되는 관리인을 2급이상 자격소지자에서 3년이상 경험자로 완화

3. 규제완화방안의 추진방향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크게 분류하면 도덕적 캠페인(설득), 정부가 통제와 명령 등을 통해 직접 규제에 나서는 방법, 배출부과금이나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시장기구를 보완하도록 간접적 유인정책을 쓰는 방법 그리고 정부가 직접나서서 환경규제를 생산, 오염을

퇴치하고 연구와 교육에 나서는 정부 직접투자방법 등이 있다.

최근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즉, 환경오염의 원인행위는 되도록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함으로서 각종 인·허가를 통한 규제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들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규제수단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이기 때문에 정부에는 이를 감시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기업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자유가 없다는 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게하는 간접규제방식인 경제적 유인제도로 규제수단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금번 규제완화 조치도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미흡하나마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도 이번 규제완화방안이 시행되려면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상반기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에도 환경보호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사후규제 즉,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환경오염방지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함으로써 환경보호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완화는 기업의 부담완화라는 일방적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향후 규제완화 방향으로는 이러한 직접규제를 과감히 풀고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환경세, 배출부과금, 오염권 거래제도, 예치금 환불제도 등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직접규제를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해나갈 것이며, 또한 꼭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직접규제방식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4. 규제완화방안의 추진방향

구분	내용	필요조치 및 추진시기
1. 환경시설 등의 허가 · 승인사업폐지	· 허가· 승인제 → 신고제 전환 — 공해배출시설 설치 — 오염물질 공동방지시설 설치 —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 — 분뇨처리시설 설치 · 서류 및 절차 간소	· 관련법률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 진동규제법 — 오수· 분뇨처리법 ° '96. 7월까지
2. 환경관련산업 규제완화	· 설립허가제도 → 등록제 — 폐수처리업 — 분뇨영업 — 정화조처리업 · 정수제한· 영업구역 제한 폐지 — 일반폐기물처리업, 특정폐기물처리업	· 관련법률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오수· 분뇨처리법 ° '96. 12월말까지
3. 자가측정 의무제도	· 자가측정의무제도 폐지	· 관련법률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 · 배출총량제 실시시기 ° '95.12월말까지
4. 환경관리인 고용기준	· 환경관리인 고용기준 완화	· 관련법률 개정 — 수질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진동· 소음규제법 ° '95. 12월말까지